

2024 년 2 월 15 일

전쟁위험 담보 관련 해지 통보

본 회람은 전쟁위험과 관련하여 발행되었으며, 아래의 피보험자 및/또는 공동피보험자에게 적용됩니다:

- Club 의 용선자책임보험에 가입된 피보험자
- Class 3(P&I)에 가입된 Member 및/또는 Club 의 용선자책임보험에 가입된 피보험자로서, Club 의 추가보험에 가입된 Member 및/또는 피보험자
- Class 3(P&I)에 가입된 Member 로서, 가입증서상에 Non-Poolable 인 담보가 포함된 Member

피보험자는 홍해를 통항하는 선박에 영향을 미치는 악화된 안보 상황을 인지할 것입니다. Club 의 재보험자가 Non-Poolable 의 재보험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전쟁위험에 대해 Club 에 해지 통보를 했으며, 이로 인해 Club 은 이에 해당하는 해지 통보를 해야 했습니다.

Club 은 아래의 조항에 따라:

- 용선자책임보험(Charterers' Liability Insurance)의 Part III Clause 1.3, 및
- 추가보험(Additional Insurances)의 Part III Clause 1.3

(용선자책임보험의 Part IV Clause 6.1 및 추가보험의 Part IV Clause 6.1 에 규정된) 전쟁위험에 대한 담보가 해지됨을 통보 드립니다. 본 통보는 그리니치 표준시로 2024 년 2 월 20 일 12 시에 발효됩니다.

Club 은 아래의 조항에 따라:

- 용선자책임보험(Charterers' Liability Insurance)의 Part IV Clause 6.2 와 Part III Clause 1, 및
- 추가보험(Additional Insurances)의 Part IV Clause 6.2 와 Part III Clause 1

그리니치 표준시로 2024년 2월 20일 12시부터 전쟁위험의 담보를 복원하는데 동의합니다만, 아래의 국가나 장소(본 통보 일자에 해당 국가 또는 장소의 일부를 구성하는 모든 항구 지역 포함)의 영해 내에 있거나 통항하는 피보험자에 대해서는 제외됩니다:

인도양, 아덴만 및 홍해 남부: 아래의 경계로 둘러싸인 해역:

- a) on the northwest, by the Red Sea, south of Latitude 18°N
- b) on the northeast, from the Yemen border at 16°38.5'N, 53°6.5'E to high seas point 14°55'N, 53°50'E
- c) on the east, by a line from high seas point 14°55'N, 53°50'E to high seas point 10°48'N, 60°15'E, thence to high seas point 6°45'S, 48°45'E
- d) and on the southwest, by the Somalia border at 1°40'S, 41°34'E, to high seas point 6°45'S, 48°45'E

다른 규정이 없는 한, 근해 12해리 이내 인접 영토의 연안 수역은 제외됩니다.

본 통보는 전쟁위험의 담보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다른 모든 담보조건은 변경 없습니다.

본 해지 통보는 기존에 제외되었던 지역에 대한 입장을 변경하지 않으며, Club의 2022년 12월 23일자 회람의 내용은 계속 유지됩니다.

Club은 적절한 Buyback 담보의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필요 시, 각 Member의 담당 Underwriting 부서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Tindall Riley (Britannia) Limited / Tindall Riley Europe Sàrl
Managers

본 번역본은 한국 Member를 위한 참고용으로 작성되었으며, 원본(영문본)이 우선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